

수지초등학교 친목회 회칙

제1조 총 칙

제1항(명칭)

본회는 수지초등학교 직장 친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항(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가정의 애경사 시에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음으로써 우의를 돈독히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항(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한다.

제2조 본 회의 임원 및 활동

제1항(임원)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무 2명**을 둔다.
2. 그룹별 간사 1명씩을 둔다.

제2항(회원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임무

제1항(권리와 의무)

1. 사안 발생 시 그룹 간사가 주축이 되어 전체 안내 및 진행을 추진한다.
2. 회장 및 총무는 그룹 간사와 상의하여 상호 부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제2항(총무)

회장을 보조하여 회계기록, 정리 및 결산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4조 회비의 운영

제1항(회비의 운영)

매월 회원의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회비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울 때 임시회의 시에 보고하고 추가 징수한다.

제2항(회비의 운영)

매월 정기 회비는 10,000으로 한다.

제5조 총 회

제1항(정기총회)

매년 1회 3월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3항(의결)

총회에서 제출된 안건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항(결산보고)

회비 사용에 대하여 감사는 결산 결과를 2월 말에 회원에게 상세히 보고한다.

〈표〉 친목회 기금 지출

구 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비고
결 혼	200,000		200,000			
사 망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조의 화환 별도
병 상	100,000					질병으로 연속1주일 이상입원하는 경우
출 산	200,000	200,000				
퇴 임	▶ 정년 / 명예 퇴임: 500,000 지급 + 꽃다발 증정					
인사이동	▶ 현금 20,000 지급					
기 타	1) 기타 사안의 발생 시 임시회의를 통해 협의 결정한다. 2) 본회를 대표하여 원거리 및 특별한 회무(모임의 사무)의 수행 시 회장의 직권으로 거리, 장소, 인원수, 회무 (모임의 사무)의 종류에 따라 일체의 교통비 및 잡비를 사용하거나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본교를 기준으로 이동 거리가 50km 이상일 때 적용하며,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동거리 편도 50km~99km는 50,000원, 100km 이상은 100,000원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 인원은 차량 운전자를 기준으로 최대 3인으로 제한한다. (관리자, 동학년, 해당부서를 우선으로 지급)					

제6조 기타 사항

제1항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나 근무 보조요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한다.

제2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를 따른다.

제3항

상조회 회칙을 변경할 경우 회원들의 2/3 이상 찬성이 있을 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 부 칙

본회의 회칙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